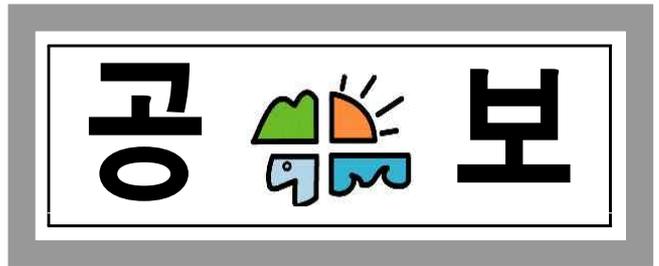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35호 2012년 11월 23일(금)

공 고

-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2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(규칙)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11월 22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
2. 제정(개정·폐지)하고자 하는 이유: 상위법인 도로법(2010. 3. 22) 제76조 및 관련법령 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:
 - 제명 띄어쓰기 변경
‘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’를 ‘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’ 로 변경
 -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,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’에 따라 용어 정비
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)
 - 도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에 대해 하자보증기간 2년 설정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조항 신설 (안 제6조 제2항, 제3항, 제4항)
4. 자치법규안: 붙임
5. 의견제출
 - 가. 이 제정(개정·폐지)조례(규칙)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: 담당)
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·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217-030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469-6)

속초시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

(전화: 033-639-2751, FAX: 033-639-2485, Eail: jsh9081@sokcho.org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행정담당 정순희(전화:033-639-2751)

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” 를 “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

“도로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 「도로법 」 제76조에 따라”로, “부담금 징수에 관하여” 를 “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” 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정의는” 을 “뜻은” 으로 하고, 같은조 제1호 중 “ “도로” 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” 를 “ “도로” 란 「도로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와 제8조에서”로, “일체”를 “모두” 로 하고, 같은조 제2호 중 “ “도로복구공사” 라 함은” 을 “ “도로복구공사” 란” 으로 하고, 같은조 제3호 중 “ “직접손괴부분이라” 함은” 을 “ “직접손괴부분” 이란” 으로 하며, 같은조 제4호 중 “ “간접손괴부분” 이라 함은” 을 “ “간접손괴부분” 이란” 으로, “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” 를 “나중에 손괴가 예상되거나” 로 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이외의 공사” 를 “이외의 공로나 행위” 로 하고, 같은항 “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7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 공사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제목 “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” 을 “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” 라고 하고, 같은조 제1항 중 “각호의 1” 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 로, “반환” 을 “환급” 으로 하고, 같은항 제1호 중 “당초” 를 “처음” 으로 하

고, “필요하지 않을” 을 “필요하지 아니하게 된” 으로 하고, 같은항 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고, “인정 할” 을 “인정하는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초” 를 “처음” 으로 하고, “예정 면적 또는 길이” 를 “허가면적을” 이라 하고, “추징하여야” 를 “추가 징수 하여야” 로 하며,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.

제6조 제목 도로법 제76조 “복구공사의 시행” 을 “복구공사 시행” 으로, 같은조 제1항 중 “시장이 일괄적으로 시행한다.” 를 “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.” 로, 같은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

다만,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시행할 수 있다.

같은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고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. 이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8조제1항의 “행위로 인하여” 를 “행위로” 하고 “긴밀한 협조로” 를 “긴밀히 협조하여” 로 하며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손괴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자체 복구를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

확인되면 부담금을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.

제9조의 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” 를 “조례 시행에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<u>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도로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공사원인자와 손피자로부터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는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<u>“도로”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,부속물,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.</u></p> <p>2. <u>“도로복구공사”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</u></p> <p>3. <u>“직접손피부분”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.</u></p> <p>4. <u>“간접손피부분”이라 함은 직접손피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피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원인자 부담금 징수) ①시장은 도로 공사 <u>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피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		<p><u>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도로법</u>」 제76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원인자와 손피자로부터 <u>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뜻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<u>“도로”란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와 제8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, 부속물, 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.</u></p> <p>2. <u>“도로복구공사”란 도로에 대한 직접 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</u></p> <p>3. <u>“직접손피부분”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.</u></p> <p>4. <u>“간접손피부분”이란 직접손피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피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원인자 부담금 징수) ①시장은 도로공사 <u>이외의 공로나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피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제76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 공사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</u></p>		

현행	개정안
② (생략) ③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<p>제5조(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)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2. (생략) 3.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<p>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신설></p>	<p>제5조(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)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처음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<p>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계획된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</p>
<p>제6조(복구공사의 시행) 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일괄적으로 시행한다. 다만,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6항의 각호 및 제24조의5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와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의 경우 원인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시가스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2.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3.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 	<p>제6조(복구공사 시행) 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속초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<삭제> <삭제> 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같은법 같은조 제8호 및 같은조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중 관경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관로시설</u></p> <p>4. <u>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중 발전소 상호간, 변전소 상호간,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간의 154,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</u></p> <p>5. <u>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외접관경이 3미터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 선로 설비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.</u></p> <p>③ <신설></p> <p>④ <신설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8조(손피자 확인의뢰)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<u>행위로 인하여</u>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<u>긴밀한 협조로</u> 손피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②손피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</p>	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② <u>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. 이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8조 별표1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0조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손피자 확인의뢰)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<u>행위로</u>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<u>긴밀히 협조하여</u> 손피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손피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자체 복구</p>

현행	개정안
다.	를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.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